

소 장

원 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3층
대표자 이종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2 모인터빌딩 2층
담당변호사 김한주, 한택근, 표재진, 김기중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18.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취급 거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위

가. 처분의 경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 6. 29. 원고에 대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홈페이지(hcy.jinbo.net)’(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합니다)의 이용해지를 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1).

원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1. 8. 2. 원고에 대한 의견조회(갑제1호증의2)를 거쳐, 2011. 8.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에 해당하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사이트 폐쇄)를 명”하는 처분(갑제1호증의3,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서를 2011. 8. 19.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폐쇄하라는 피고의 처분에 따라 2011. 8. 26. 이 사건 웹사이트를 폐쇄하였습니다(갑제2호증).

나. 처분의 사유

피고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사이트(<http://hcy.jinbo.net>)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

분을 하면서, 위 사이트가 어떤 이유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인지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어 있고(갑제1호증의1), 피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아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국대학총학생연합(이하 '한총련') 홈페이지는 [한총련소개], [속보], [자료실], [문화국], [게시판], 등 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총련 소개] 메뉴에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속보] 메뉴에는 총 70,458건(2011년 6월 24일 현재)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으며 [자료실]메뉴에는 문서 자료 5,400여건과 선전자료 1,169건 등이 게재되어 있고, [문화국] 메뉴에는 '문예자료', '문예이론 토론방', '동아리 운영' 하위메뉴에 100여건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으며, [게시판] 메뉴에는 5,100여건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음.

경찰청 요청자료에 따르면, 한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85 판결, 2004. 8. 30. 선고 99도4027판결, 2004. 8. 30. 선고 2004도3012 판결 등 다수)되고 있어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따른 삭제명령을 불이행함에 따라 고발 조치(5차)된 바 있고, 한총련 홈페이지에는 노동신문,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체제 선전사이트에 게시된 수천건에 이르는 이적표현 게시물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해당 정보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미화, 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경찰청의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로 의결함.

2. 관련 법령 규정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7을 근거로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4조(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3. 원고의 지위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원고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단체는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며,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갑제3호증의1 및 갑제3호증의2 정관 제2조)

원고 단체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재정을 충당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입니다. 원고는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메일 계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갑제3호증의3, 진보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 자원 제공에 대한 규칙 참조)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원고 단체의 회원이며,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버공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단체는 회원에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공간을 제공할 뿐이고, 그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2001. 7. 1. 법률 제6360호의 전부개정법률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4조의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제42조) 등의 경우와 같이 몇 개의 예외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허가대상인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고대상인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같은법 제5조).

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제공

매개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제공매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고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제공 또는 제공매개자라 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웹사이트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이고, 원고 단체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게시판의 관리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도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게시판 관리·운영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관리·운영자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해 이 사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며 게시판 관리·운영자도 아닌 원고 단체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4. 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도 의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추후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처분의 근

거가 된 법령의 위헌성과 처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근거법령의 위헌성

(1) 개괄적인 개정 연혁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2. 6. 27. 99헌마480)을 받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을 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의 단속’의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며,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위 위헌 결정 이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03. 3. 27.부터 시행되었고, 이 규정은 2007. 1. 26.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해 규정내용은 전혀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되었고, 그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의 규정과 같습니다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위헌인 이유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1) 다만, 규정내용에 변경은 없으나, 각 법률의 수범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통신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그 의무부담자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판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 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위헌결정된 ‘불온통신’이라는 단어를 ‘불법통신’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규제대상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위헌결정 이전의 법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규제의 구조를 온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표현물의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의 대상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불법통신’으로 행정부가 표현물의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아동 포르노와 같이 불법성이 뚜렷한 성표현물이 아니라) ‘음란물 일반’(1호), 스토킹(3호), 정보시스템 운용방해(4호),

사행행위(6호)을 포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한계를 벗어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유는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통신의 내용에는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폐지 여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법률인데다 ‘정보의 신속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분야이므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8호는 특히 그 위헌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규제의 방법인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행위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위헌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사이트 폐쇄)”를 명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가 곧 “사이트 폐쇄”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이라는 규정이 “사이트 폐쇄”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데다, 만약 “사이트 폐쇄”라는 행위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라면, 행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특정 웹 사이트의 이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통신 규제는 행정부에 의한 내용심의로

서 헌법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추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정보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여, 어떠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그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합니다.

피고는 의견조회서나 명령서에서 시정대상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어떤 항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첫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둘째,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셋째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통상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의 죄로 칭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목적성을 가진 자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도 ‘행위 수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1. 갑제2호증 폐쇄 안내문
- 1. 갑제3호증의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2 정관
- 3 네트워크 자원 제공에 관한 규칙

첨 부 서 류

- 1. 소장부분 1부
- 1. 위 입증방법 각 2부
- 1. 위임장 1부

2011. 11.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 한 주

한 택 근

표 재 진

김 기 중

서울행정법원 귀중